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2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인 「학교보건법」 이 교육감에게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 ·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, 법률의 위임 없이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치입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5조제1항 전단 및 안 제6조제2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실시하여야 한다” 를 “실시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5조제1항 전단).
- “안내하여야 한다” 를 “안내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6조제2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 전단 중 “실시하여야 한다”를 “실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안내하여야 한다”를 “안내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〈신 설〉	<p><u>제5조(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)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,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 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)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〈신 설〉	<p><u>제6조(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)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,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</u></p>	<p>제6조(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.</p> <p>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,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</p>

수 있도록 안내하여
야 한다.

수 있도록 안내할 수
있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학생의 도박 예방교육”을 “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예방교육”을 “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학생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

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)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,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제2항의 교육·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)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,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.

제7조(도박 예방·근절 문화 조성)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·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·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·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,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</u> <p>제3조(책무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5년마다 <u>학생의 도박 예방교육</u>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그 밖에 학생 도박 <u>예방교육</u>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③ (생 략)</p>	<u>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</u> <p>제3조(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<u>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학생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----- <u>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</u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5조(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)</u></p> <p><u>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,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도박 예방 교육과 제2항의 교육·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6조(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) ①</u></p> <p><u>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,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7조(도박 예방·근절 문화 조성) ①</u></p> <p><u>교육감은 도박 예방·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·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·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,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
<u><신 설></u> <u>제5조 · 제6조 (생 략)</u>	<p><u>제9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제10조 · 제11조 (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)</u></p>